

최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

- 정부는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(2005년), 테슬라요건 상장제도(2017년)에 이어 금년 4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·벤처기업의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도모
 - 이에는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개편하고,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및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를 정비할 주 내용으로 함
-
- 2018년 4월 정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·벤처기업의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도모
 - 그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(2005년), 테슬라요건 상장제도(2017년)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나, 기존의 코스닥 상장규정은 기업의 수익성 중심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
 - 또한 코스닥시장은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정적 이미지와 낮은 신뢰도로 인해 장기 투자수요가 부족한 상황
 - 2005년 도입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코스닥상장기회를 부여하는 제도
 -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인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 기업은 일반·벤처기업에 비해 일부 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됨
 - 일반·벤처기업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에 있어 수익성·매출액 기준 또는 시장평가·성장성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하지만,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10억원 이상,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요건으로 완화
 - 2017년 초 기준 상장예정 기업 수 포함하여 특례 상장한 기업은 37개사로, 2015년 12개사, 2016년 10개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, 바이오 기업 뿐 아니라 非바이오 기업의 특례상장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화 기조 유지¹⁾
 -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테슬라요건 상장제도는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상장이 가능토록 한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제도
 - 테슬라요건 상장은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과 유사하지만 기술평가 대신 사업성을 평가받고,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통해 상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 - 테슬라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상장주관사는 일반투자자에 대해 주권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

1) 한국거래소, 2018.1.15, 2017년 코스닥시장 상장 현황 및 특징 분석, 보도자료

-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적자상태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뤄낸 것에서 나온 것으로 국내에도 1호 테슬라요건 상장기업이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²⁾

□ 금년 4월 들어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·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(2018년 4월 9일 시행)

- 금번 개정에서는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개편하고,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및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

〈진입요건 개편〉

- 코스닥 신규상장에 있어 이익실현 상장요건 중 업력, '계속사업'이 있고, '자본잠식'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(코스닥 상장규정 §6① 1호, 2호 삭제)
 - (기존) 업력 3년(벤처 면제),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을 것
 - (개정) 업력 면제,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미적용,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
 -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(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), 시가총액 90억원 이상
 -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(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), 자기자본 30억원 이상(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)
 - ③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,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, 매출액 100억원 이상(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)
- 이익미실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'테슬라 요건'을 활용하여 일정규모의 영업기반(매출액)과 시장평가(시가총액) 또는 성장가능성 요건을 통해 상장 가능(§6① 6호 나목)
 - (기존)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(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% 이상),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비율 200% 이상
 - (개정) 시가총액 1,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일 것을 충족,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에 매출액 100억원 이상(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) 요건 신설
-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시 시장성·수익성 이외 성장성 요건(매출증가율, 매출액, 영업이익)을 추가하여 성장성 있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 지원(§7⑨)
 - (기존) ①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,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, 영업이익 시현
 - ②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 10% 이상,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, 자기자본이익률 10% 이상
 - ③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, 자기자본이익률 20% 이상
 - (개정)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200억원 이상, 직전 사업연도 대비 매출증가율 20% 이상,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요건 신설

2) 한국거래소, 2017.12.11, 테슬라 1호 기업(카페2(주)) 상장예비심사 승인, 보도자료

〈부실기업 조기퇴출 및 불건전행위 방지〉

- 경영투명성,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발적 보호예수를 규정 상 보호예수의무 준수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(§21①, §22①, §22의2①, §22의3①, §38의2⑦)
 - (기존) 최대주주 등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,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 및 상장주선인의 상장 전 지분취득 사례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 방지 필요성 증가
 - (개정) 자발적 보호예수 준수 의무를 명시, 위반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,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~6개월 간 보호예수의무 부과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요건을 강화(§38②)
 - (기존) 불건전행위 기업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상장유지여부 심의·의결,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
 - (개정) 불건전행위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 확대
 - ① 공시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
 - ②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
 -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·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중요한 범위 제한 또는 검토·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경우
 - ④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

연구원 신경희